

# 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2-2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하이투자증권(주)

## 2. 조치내용
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에서 금지하는 ‘매매주문 수탁 부적정’에 대하여 하이투자증권(주)에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조치

제재대상	신분제재		금전제재	
	금감원	금융위 심의	금감원	금융위 심의
하이투자증권(주)	-	-	과태료 80백만원 부과	과태료 80백만원 부과

## 3. 조치이유

### 가. 지적사항

#### 1.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

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(이하 ‘정당한 매매주문자’)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- 하이투자증권(주) ○○○지점 前 영업부장 ◇◇◇은 20xx.xx.xx. ~ 20xx.xx.xx. 기간 중 고객 2명(□□□, ■■■)의 위탁계좌를 관리 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(▣▣▣)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(△△회, 주문금액 ▲▲▲백만원)한 사실이 있음

#### 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71조
-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 제1항